

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(두루누리 사업장용)

☐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「일자리 안정자금」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동 신청서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
안정자금 희망여부 ☐ 예 ☐ 아니오 . 지급희망일(☐10일 ☐20일 ☐30일)

사업장명

은행명

최저임금 준수여부 ☐ 예 ☐ 아니오

☐ 안내사항

- ❶ 귀사에서 두루누리(사회보험료 지원)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됩니다.
- ❷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하여 지급됩니다.(보험료 상계방식은 불가)
- ❸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가 아닌 일반절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, 공동주택·건설업·별목업, 일용근로자,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소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❹ (유의사항) ‘18년도 확정된 보수총액(‘19년 신고)이 190만원의 110%(209만원)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❺ 지원금은 10, 20, 30일 중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일자에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

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10

신청인(사업주) : (서명 또는 인)

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복지+센터 귀하

문의: 055-730-1910 , 팩스 0505-130-1114, 이메일 newlife9999@korea.kr